연간운영상황보고서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2024년 의왕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발행일 2025. 2.
발행처 의왕시 시민옴부즈만
편집인 의왕시 시민옴부즈만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시민소통관실
전화 031)345-2690
홈페이지 www.uiwang.go.kr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서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목 차

Ⅰ 운영상황

제1절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상황

제3절 의왕시의회 의뢰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절 민원상담 및 홍보

Ⅱ 옴부즈만 처리 사례

제1절 신청취지 인용 사례

제2절 조사중 해결된 사례

제3절 흠결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II 옴부즈만 제도 소개

제1절 옴부즈만 제도 개요

제2절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제3절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4절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IV 부록(관계법령)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1 운영상황

Ⅰ 운영상황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 2024년도(2024. 8. 26. ~ 2024. 12. 31.)에 의왕시 옴부즈만이 접수한 고충민원은 **총9건**임.

○ 월별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월별 고충민원 접수건수>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0	1	4	2	2	9

○ 고충민원 접수 방법에 따른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방법별 고충민원 접수건수>

구분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홈페이지	합계
건수	4	5	0	0	0	9

○ 고충민원의 분야별 접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건수>

구분	건축	교통	환경	복지	도시개발	하천	체육	인권	합계
건수	1	2	1	1	1	1	1	1	9

1 운영상황

2 고충민원의 처리상황

○ 2024년도에 옴부즈만은 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7건을 조사 · 처리(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1건 조사 중 해결 2건)하였고, 나머지 2건은 타 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이송(1건)하였으며, 1건은 신청취하 되었음.

<고충민원 처리 상황>

처리유형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기각	취하 · 이송	합계
건수	2	1	2	2	2	9

○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9건의 처리 소요 일수는 신청취하 1건 및 타 기관 이송 1건을 제외한 15일 이내가 5건, 30일 이내가 1건, 31일 이상 40일 이내가 1건임. (평균처리기간 17일)

○ 신청취하 1건 및 타기관 이송 1건을 제외한 처리 7건 중 5건이 인용 되었으며(70%),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3건 모두 해당 부서에서 수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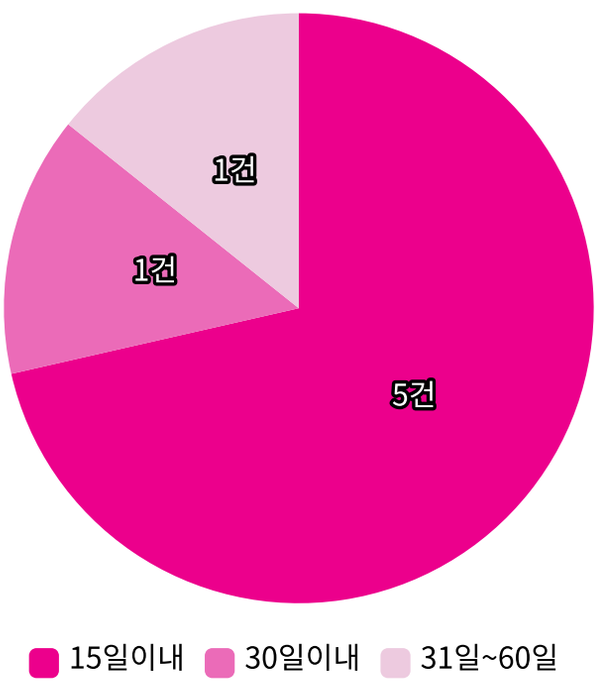

처리유형	시정권고		의견표명	
	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건수	2	-	1	-

Ⅰ 운영상황

3 의왕시의회가 의뢰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조사개요

·기 간: 11. 01. ~ 2024. 12. 18.(38일)

·대 상: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

·주 관: 의왕시 옴부즈만

·근 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호

■ 조사의뢰내용

의왕시는 2024. 9.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지역주민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시하였고, 도시공사 임원은 설문조사 실시 과정에서 특히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 및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 즉 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왜곡하였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결과

○ 이 사건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공사와 의왕시가 주민간담회가 시작될 당시부터 도시공사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주민들 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체 설문조사 등에 따라 주민들의 통일된 의 견인 공유주방을 제시하자 그 때에 비로소 의왕시가 위와 같은 사정 들을 고려 하여 도시공사 사옥 1층은 주민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공유주방은 부곡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의왕시와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주민들 사이의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함

○ 스티커 부착 방식의 주민설문조사는 주민의 의견이 왜곡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는 지양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의왕시의회 시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e직접 누리집 (juminegov.go.kr)”을 통한 설문조사에 도시공사 임직원이 이에 개입 하여 주민의견을 왜곡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임원(상임이사)이 절대 행해서는 아니될 행위일 뿐만 아 니라 의왕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1조의2 제2호 및 제5호에도 위배됨

Ⅰ 운영상황

3 의왕시의회가 의뢰한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 권고사항

○ 향후에는 스티커 부착 방식의 주민설문조사를 지양하고, 의왕시 전부 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 등 주민의 진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문조사 모델을 개발하여 전부서에 배포할 것을 권고함

○ 2024. 9. 11. 의왕시에서 발표한 '2026. 6. 부곡커뮤니센터 건립 후 부곡동 주민센터 3층 또는 4층에 공유주방 설치'와 관련하여 주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후 시 예산부서와 협의(특히, 예산 규모 등)하여 우선 개략적인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함

○ 도시공사 임원은 2024. 9. 의왕시의회 시의원이 "주민e직접 누리집 (juminegov.go.kr)"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행위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 니라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투표강요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함

Ⅰ 운영상황

4 민원 상담 및 홍보

○ 2024년도에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외에 3건의 민원을 상담하였는데, 상담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의 지목변경,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시정, 공공택지개발지구내에서 분양 중인 다세대 주택 제척요구 등임

연번	상담내용
1	【상담신청 요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GB)에 신청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1960년에 건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위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왕시에서는 GB내에서는 진출입로라 하더라도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함
	【상담 내용】 위 근린생활시설은 1971. 7. 20. 개정된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되었고 또한 그 당시에 진출입로도 개설한 것이므로, 별도의 도로개설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해당 부서에 소명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것을 안내함
2	【상담신청 요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하지(線下地) 보상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조차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감사하여 달라는 상담을 요청함
	【상담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왕시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따라 감사요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입주자의 동의서등을 첨부하여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안내함

Ⅰ 운영상황

4 민원 상담 및 홍보

연번	상담내용
	【상담신청 요지】 신청인은 202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가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를 포함한 약 187만㎡(56만9천평)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마침 그 지역은 신청인이 빌라를 신축하여 현재 분양하고 있는 지역인데, 위 지정고시로 인하여 남은 빌라 5채를 분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상담을 요청함
3	【상담 내용】 신청인이 빌라를 신축한 지역은 2024. 11. 5.「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왕오전·왕곡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된 지역이어서 향후 수분양자가 신청인이 신축한 빌라를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분양자는 위 지구지정 이후에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해당하여 위 공공주택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만을 받을 수 있을 뿐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없으니, LH공사에 위 신축빌라 부지를 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안내함

I 운영상황

4 민원 상담 및 홍보

- 옴부즈만 제도 안내 홈페이지 공간 구성완료
-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마련
- 제도홍보 배너 시 본청 및 각 동 민원실에 비치
- 시 본청 및 각동 옴부즈만 홍보 리플렛 비치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11 고충민원 처리사례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사찰 등 표기(시정권고)
-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도로중앙분리봉 설치(시정권고)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의견표명)

2 고충민원 조사 중 해결된 사례

- 그린벨트 지역인 왕송호수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중지
- 공동주택 신축현장 인근 사찰에 대한 소음단속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중지
- 하천편입토지 일부 환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1>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사찰 등 표기(시정권고)

■ 대상기관 : 의왕시 건축과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A건설회사가 신청인 종교시설과 봉안당(납골당) 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의왕시공공주택지구 B-1블럭에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설 중인바, 이 민원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이 민원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신청인의 종교활동 및 봉안당 운영업무를 상대로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입주자모집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은

① 명절 등 특정일에 다수의 신도 및 참배객의 방문이 쇄도함으로써 이 민원 공동주택과 신청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몹시 혼잡할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종교활동 시간에 맞춰 매일 06:00에 33회, 11:00에 33회, 18:00에 28회 각 타종 및 독경을 실시함으로써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시설에 봉안하기 위하여 이 민원 도로로 운구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에서 이 민원 시설 등이 보이는 점"등을

이 민원 공동주택 입주희망자 등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고, 이 민원 사업주체의 분양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책자에도 이를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달라.

■ 옴부즈만의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이 민원 공동주택의 분양자인 이 민원 사업주체인 A건설회사에게 있지만, 이 민원 공동주택 단지 104동 및 105동의 남서쪽 바로 옆에는 신청인이 관리·운영하는부도 형태의 석탑 200여 개와 본관 4·5층 및 별관 2층에 안치된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1>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사찰 등 표기(시정권고)

유골함 900여 개에 이르는 대규모의 봉안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 이 민원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동호배치도 및 조감도 등에는 이 민원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수목이 식재된 숲으로만 나타나 있을 뿐이고 이 민원 시설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민원 시설의 입구에 건축된 본관은 이 민원 아파트 104동 및 105동으로부터 약 80 ~ 100m 떨어져 있지만 본관 4층·5층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함이 이 민원 아파트 104동 및 105동의 일부 세대의 창에서 보이고, 나아가 본관과 종교시설 사이의 서남쪽에 조성된 부도 형태의 석탑들도 이 민원 아파트 104동 및 105동의 일부 세대가 창을 통해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사실, 현재 입주자모집이 공고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민원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이 민원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고지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민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이 이 민원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신청인의 종교활동 및 봉안당 운영업무를 상대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점, 공동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를 비롯한 아파트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등이 포함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발생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업주체의 경우처럼 분양가격과 경쟁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민원 시설의 존재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등을 예상하여 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 제30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는 행정기관이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행위로 인하여 이 민원 사업주체와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간의 분쟁은 물론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과 신청인간의 분쟁 등 대규모 분쟁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청인으로부터 행정권의 발동(이 민원 신청 취지에 해당하는 5가지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포함되게 하라는 것)을 요구받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1>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사찰 등 표기(시정권고)

또한「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사업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동주택 입주희망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선 이 민원 사업주체의 분양 홈페이지 등에 신청인이 제시한 5가지 사항이 표시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원 사업주체가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위 사항들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민원 사업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입주희망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없거나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방법의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본건 시정권고에 의하여 개선된 사항(시정권고 수용)

피신청인은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내용에 따라 A건설회사에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A건설회사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단지 남서측 위치에 종교시설 및 납골당이 있으며, 종교시설 특성상 행사 및 방문객이 발생할 수 있고, 종교활동, 타종 등 특정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특성상 차량의 이동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봉안시설 특성상 일부 동에서는 시설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였으며,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게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2>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도로중앙분리봉 설치(시정권고)

■ 대상기관 : 의왕시 교통정책과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왕송못서길[중로 2류(폭 15 ~ 20m).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은 왕복 2차선 도로로서 평상시에도 이 민원 도로 주변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하는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에는 도로의 양쪽에까지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우선 이 민원 도로의 중앙에 분리봉(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분리봉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상시 주차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라.

■ 옴부즈만의 판단

이 민원 도로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해소하는 데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고, 또한 비록 시선유도봉이 주정차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 민원 도로에서의 불법주차는 지나칠 정도로 아주 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한 경기도 평택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의 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후 불법 주차가 해소된 사례가 언론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등 시선유도봉의 설치가 불법주차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도로의 중앙에도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돌진 등으로 파손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시선유도봉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온 부품과 유도봉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 등의 단점도 있는 등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시 주차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이 민원 도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조만간 조성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 민원 도로의 대체도로가 개설되면 상시 주차단속을 위한 CCTV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본건 고충민원에 의하여 개선된 사항(시정권고 수용)

내년에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예산을 확보한 후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설물이 파손되면서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위협과 도시미관 손상)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의견표명)

■ 대상기관 : 의왕시 교통정책과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4. 9. 중순 19:40 경 의왕시 삼동 제1 교차로의 모퉁이(이하 '이 민원 1 지역'이라 한다)에, 그리고 다음 날 18:57 경 의왕시 삼동 제2 교차로의 모퉁이(이하 '이 민원 2 지역'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각각 불법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하순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민원 사전통지 1'이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달 중순 17:19에 부곡로(이하 '이 민원 3 지역'이라 한다)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로 단속된 이 민원 차량의 주차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 달 하순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민원 사전통지 2'라 한다)를 받았는바,

이 민원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이 민원 1, 2, 3 지역은 부곡대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차로가 폐쇄됨으로써 교차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전통지 1, 2를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그리고 **위 지역은 부곡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달라.

■ 옴부즈만의 판단

우선 신청인이 2024. 9. 중순 19:40경에 이 민원 차량을 주차한 이 민원 1 지역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이고, 그리고 다음 날 18:57경에 이 민원 차량을 주차한 이 민원 2 지역은 부곡로 재개발사업구역 밖의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에 해당되므로, **이 민원 사전통지 1은 달리 위법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4. 9. 중순 17:19 경에 주차한 이 민원 3 지역의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 민원 사전통지 2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3 지역은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주차구역(노상주차장)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부곡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에 포함된 교차로는 모두 폐쇄되어 부곡로의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교차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 당초 부곡로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가 설치될 당시 이 민원 3 지역의 경우처럼 교차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이 민원 3 지역도 주차구역으로 설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고충민원의 신청취지가 인용된 사례

<사례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의견표명)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차로가 폐쇄된 이 민원 3 지역에서의 주차를 이 민원 1, 2 지역에서의 불법 주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민원 사전통지 2를 행한 것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여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이 표시된 지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사전통지 2를 행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 인근은 부곡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니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우리 시 옴부즈만도 현지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민원 지역 인근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전혀 없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피신청인은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기권 비율조정을 통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일반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하므로, 이로써 주차난 해소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방법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건 고충민원에 의하여 개선된 사항(의견표명 수용)

이 민원 사전통지 2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라 취소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2 고충민원 조사 중 해결된 사례

<사례1> 그린벨트 지역인 왕송호수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중지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의왕시는 GB지역인 왕송호수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 하는데, 이는 왕송호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타운 조성이라는 방향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왕송호수의 습지기능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중단하라.**

■ 조사 중 해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파크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음(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970호, 2024. 9. 5. 시행).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왕송호수 인근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고충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아 종결**함.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2 고충민원 조사 중 해결된 사례

<사례2> 공동주택 신축현장 인근 사찰에 대한 소음단속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왕시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지하 3층, 지상 17-20층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동주택의 서남쪽에 인접한 종교시설(이하 '이 민원 종교시설'이라 한다)에서는 2024. 10월 경부터 이 민원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향하여 확성기를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소음을 송출하고 있으니, 이를 중단하게 하여 달라.

■ 조사 중 해결

본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에 옴부즈만은 이 민원 종교시설의 법률대리인에게 소음송출중단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종교시설에 대해 소음자제 요청 공문 시행은 물론 이 민원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음송출을 자제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최근에는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65db(A)] 이하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로써 귀하의 고충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아 본 민원을 종결함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사례1>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중지

■ 대상기관 : 의왕시 가족아동과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왕시 소재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전환을 신청하여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부결(부적격 판정)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모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국공립으로 전환될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경쟁(공개모집)이 아닌 신청인이 추천한 자를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달라.**

■ 옴부즈만의 판단

신청인은 국공립으로 전환될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위탁운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제1차심의에서는 물론 제2차 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추천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될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민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의 2차 심의 후 개최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현 원장(신청인)에 대한 심의부결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은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속히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사례2> 하천편입토지 일부 환매

■ 대상기관 : 의왕시 안전총괄과

■ 고충민원의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의왕시 소재 토지 중 12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2010. 2. 22. ~ 12. 18. 시행한 소하천(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수해복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일직선이 아닌 꺾어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의 하천구역선을 일직선으로 조정한 후 남은 토지를 환매하라.**

■ 옴부즈만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이아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등 참조), **이 민원 토지는 연접한 다른 토지와 함께 이 민원 하천의 제방에 설치된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농로는 1대의 차량만이 통과할 정도로 그 폭이 약 2.2m에 불과하여 이 민원 토지 중 꺾인 부분을, 하천교량과 직결된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농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위 농로에서 하천교량과 직결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의 대기장 또는 회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 중 꺾인 부분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천구역으로 설정·관리하고 있는 등 여전히 이 민원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2호의'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II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3 의왕시 행정처분 등에 흠이 없다고 판단(기각)한 사례

<사례2> 하천편입토지 일부 환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이 민원 사업은 2010. 12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환매권은 2021. 1월에 제척기간 10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사업완료일부터 14년이 경과한 2024. 12. 16.에 비로소 환매를 요구하는 취지의 본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환매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III 옴부즈만 제도안내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1 옴부즈만 제도 개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 옴부즈만은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권한을 사용하여 시민과 행정기간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함

○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 시작된 제도로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전파되고 1950년대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각국에서는 호민관, 민정관, 시민보호관, 행정감찰관, 중재자, 국민의 변호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4년「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 2005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거치며 옴부즈만 제도가 태동하였고, 2008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반부패 · 국민권익침해 해결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해 옴부즈만 제도가 확대됨

○ 지방의 옴부즈만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11곳, 기초 지방자치단체 83곳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기능

○ 행정통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의견표명,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행정감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존 권리구제 제도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시민과 행정 간 중간자적 중재

○ 행정개혁: 강제적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부드러운 법률(soft law)' 적용을 통해 행정관성 완화

○ 정보공개 및 민주적 권익보호: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필요성

○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전문화양상으로 **행정재량권이 확대되어 적절한 행정통제 수단 필요성** 대두

○ 사법적 구제수단 등 **기존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새로운 제도** 필요성 대두

○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을 통해 시민과 행정 양자 간 갈등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마련

○ 국가 통치행위로서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고객·시민중심의 행정가치 확산**의 노력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1 옴부즈만 제도 개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장점

○ 위법·부당하거나소극적 행위, 불합리한 제도로 받은 불편·부담등을 포함 포괄적 권익구제 가능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달리 신청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가능

○ 민원인이 심리적·경제적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접근성 높음

○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 및 적극행정 실현, 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중재 가능

<권익구제 제도 간 특징 비교>

구분	옴부즈만 제도 (고충민원처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불편 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 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권익구제
범위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 부담 등 포괄적인 권익보호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행정처분의 적법성 (재량 일탈남용 포함)
기간	신청기간 제한없음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성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접근성	용이함 (구두, 서면, 방문 등 다양)	비교적 용이함	어려움
비용	무료	무료	경제적 부담
구속력	언론공표 등 간접강제의 실질적 구속	기속력(행정청)	기판력(법원, 당사자)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정을 감시하여 비위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왕시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2024년 8월에 발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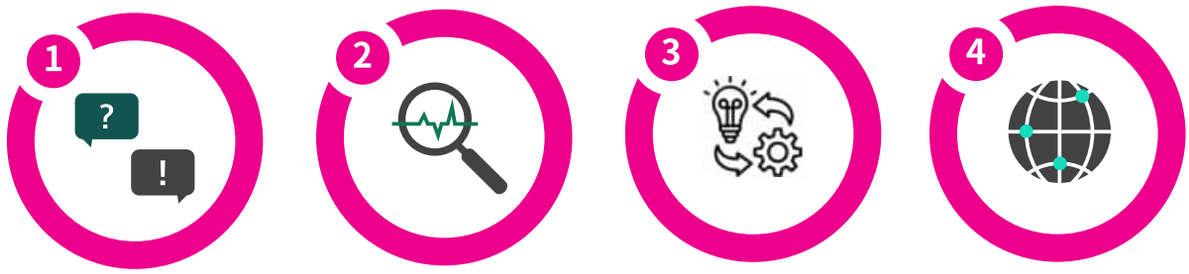

시정권고·의견표명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통한 고충민원의 자발적 해결 유도

고충민원 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등 조사

제도개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증진 도모

시민사회 소통
시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 연혁

◯ 2023. 12.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 6. 의왕시 옴부즈만 모집공고
◯ 2024. 6.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 2024. 7.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4. 7. 의왕시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2024. 8.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개시
◯ 2024. 12.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의왕시 옴부즈만 개요

◯ 구성: 시민옴부즈만 1명
(독임제, 직무의 독립성 보장)
◯ 신분: 위촉직
◯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근무형태: 상근직(주3일)

의왕시 옴부즈만 소개

차태환 위원장

주요 약력

前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
前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만
前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前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의왕시 옴부즈만의 관할 및 대상

◯ 시 및 그 소속 기관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등

위 대상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의왕시 옴부즈만의 직무

①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②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③ 의왕시장 및 의왕시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④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⑤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⑥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⑦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⑧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⑨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3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 법률, 세무·회계,행정, 건축, 보건·복지,교통·환경의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

○ 옴부즈만 고충민원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

<분야별 옴부즈만 자문위원 구성현황>

계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현황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6	1	1	1	1	1	1

자문위원회 개요

○ 근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 자격: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인원: 6명 (특정 성별 60%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 위원장: 시민옴부즈만(1명)

자문위원 역할

○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검토

○ 기타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III 옴부즈만 제도안내

3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관련 보도자료>

2024년 12월 31일 (화)

수도권일보

지역 07면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신규 위촉

의왕시는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왕/우민기 기자 woomin80@suddkwon.com

2024년 12월 31일 (화)

경기매일

지역 10면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위촉

2년 임기 동안 고충 민원 해결 위한 전문적 조언 제공

의왕시는 12월 27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왕 = 장병옥 기자

2024년 12월 31일 (화)

현대일보

지역 12면

의왕시 "시민 고충 해결" 옴부즈만 전문성 강화

법률·행정·환경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6명 위촉

의왕시는 지난 27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면서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왕/이정희 기자 lyeng55@hanmail.net

2024년 12월 30일 (월)

매일일보

전국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신규 위촉

옴부즈만 전문성 강화로 시민 고충 해결 기대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신규 위촉 (사진=의왕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7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2024년 12월 30일 (월)

경기뉴스탑

경기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신규 위촉

- 옴부즈만 전문성 강화로 시민 고충 해결 기대

장동근 기자

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식(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2월 27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고충 민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해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처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동근 기자

jdg1330714@naver.com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4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일반민원 고충민원의 비교>

일반민원

일반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행정기관에 단순 행정절차, 형식요건 등에 대한 설명요구, 일상생활 불편을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민원처리법제2조)

고충민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의 신청

○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함

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②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④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내용
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⑦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⑧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

○ 고충민원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받고 있으며, 문서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해야 함

○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는 보호됨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4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60일 이내

○ 조사·처리에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문서로 통지함

옴부즈만 조사 제외 대상

○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으나,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음**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⑧ 의왕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함**

① 각하의 대상

②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충민원의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III 옴부즈만 제도안내

4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옴부즈만 결정례의 유형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표명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 또는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개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체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 처리할 경우
각하·이송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 시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여 각하하거나 이송하는 경우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결	각하 또는 이송 되었거나 고충민원의 내용 등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하**	신청인이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문서로써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

Ⅲ 옴부즈만 제도안내

4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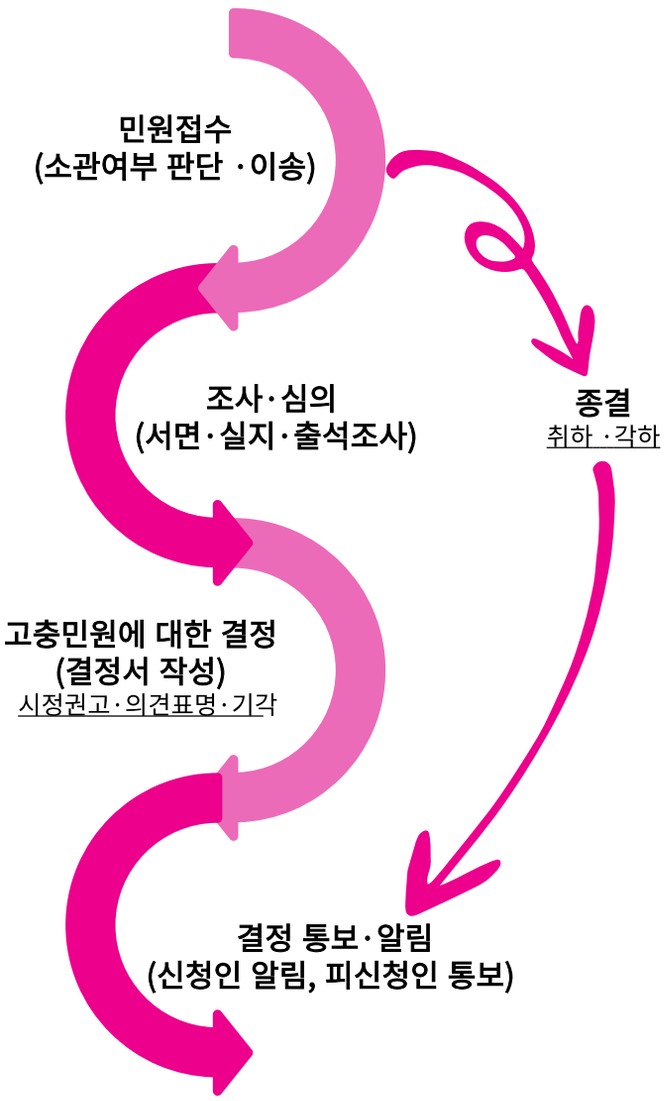

신청방법

방문·우편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시민소통실(2층) 방문 상담은 평일 월·수·금 운영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식 누락없이 작성 · 공문, 도면,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함께 첨부
팩스	031-345-2079 수신여부 확인: 031-345-2064	
전자우편	uiwangombu@korea.kr	
인터넷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접속 (소통참여 → 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안내)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Ⅳ 부 록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83호, 2023. 12.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 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자격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3.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관할 대상) 옴부즈만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

제6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의왕시 퇴직 공무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정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조(제척·기피·회피)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3항,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고충민원 신청·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에 따른 특별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인사·처우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 및 민원현장 확인 · 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5.] [경기도의왕시규칙 제940호, 2024. 7.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왕시 옴부즈만

제2조(옴부즈만) ① 의왕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일 및 활동시간) ① 옴부즈만의 활동일은 주 3일을 기본활동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활동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활동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활동일수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활동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1일 활동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제척 · 기피 · 회피 등)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8조(신청 및 접수)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 · 단순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실시 통보) 법 제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이 법 제 4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 · 서면(공문 포함) · 구술 · 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 ① 옴부즈만이 법 제4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사 결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법 제4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옴부즈만은 법 제52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 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 · 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2조(사무국의 업무)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 · 상담 · 접수 및 민원 조사 · 처리 지원
2. 옴부즈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 · 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사무국의 운영) 제22조의 사무국을 두지 않은 경우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 공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 · 의결 관련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6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의왕시 공인 조례」 및 「의왕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정보의 공개) 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